

「2027년 농림축산식품(산림소득분야) 지원사업」 신청 공고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7조에 따른 규정에 의거,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 소득분야 (소액)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

파 주 시 장

1. 사업 개요

가. 사 업 명 : 2027년 농림축산식품(산림소득분야) 지원사업

나. 신청기간 : 2026. 6. 10.(수) ~ 7. 31.(금) 18:00

다. 접수방법 : 방문 및 등기접수

-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접수가 불가함.

- 등기접수는 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.

라. 접 수 처 : 파주시 산림정원과(우10894, 파주시 금바위로 10)

마. 사업내용 : 사업시행지침 내 세부 지원조건 확인

바. 제출서류

- (공통) 사업신청서식^[붙임1], 농업(임업)경영체 확인서, 견적서

- (추가서류) 임대차계약서,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(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 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
○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

구 분		지 원 자 격
임업인 등 * 개인에 한함	임업인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	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 포함)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*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
	임업후계자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	독립가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립가
	신지식농업인 (임업분야)	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생산자단체	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* 확인방법 : 등기부등본, 품목 출하실적, 교육이수증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

○ 지원요건

-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 하여야 보조금 교부됨
 - * 산림소득분야 협·단체, 임업진흥원, 산림조합, 산림교육원, 대학교 등 산림·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(고등학교·대학교 산림·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·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,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)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
 - *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되며,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(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,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)
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함
 - * 단, 임업인 등(생산자단체 제외)이 ‘등기 비대상 시설물’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

○ 우선지원

-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
- 농업재해보험(농작물 및 농업인)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(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)
-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%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·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
- 저온, 가뭄·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: 표고재배사 냉·난방시설, 관수·관정 시설 비가림시설, 냉해예방시설(방사판, 미세살수장치 등), 지주대, 지지대, 받침대 등
- 「임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(산양삼)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
-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,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
- ‘K-FOREST FOOD’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

○ 제외대상자(지원제한기간 : 5년 이내)

- (5년)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
- (3년)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
- (2년)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 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
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 소액사업은 2년간, 공모사업은 3년간
- *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
- *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

○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

- 뚝은감 : (사)한국뚝은감협회(02-2080-6380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

○ 참고·주의사항

-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,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정원과 산림휴양팀(☎031-940-4612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사업신청서 1부.

2.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(산림청) 1부. 끝.

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

1. 현 황

영 농 규 모 (ha)		임야	논	밭	과수원			계	
	소유								
	임차								
	계								
재 배 현 황 (ha)	표고	뚝은감	취나물	고사리				계	
시 설 현 황	개별 시설	관수시설	저온저장고	일반저장고	선과기	기 타			
		관 정 : ha	m ²	m ²	대				
		점적관수 :							
		스프링쿨러 :			(톤)				
	공동 시설	저온저장고	선과장	인공수분기	수송차량	교육장	기 타		
		m ²	개소 (톤)	식	대 (톤)	m ²			
<p>(주) : 1. 선과기의 ()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. 수송차량의 ()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</p>									
기 타 사 항									

2. 사업계획

- 사업명 :
- 세부사업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규격	단가	사업량	사 업 비					
				합계	정부지원(재원명기재)			지방비	자담
					계	보조	대출		
계									
농가									
농가									

- 자부담금 확보계획
- 부지확보 계획(건축공사가 있는 경우)
- 세부사업별 추진일정

세부사업명	1/4분기	2/4	3/4	4/4

* “ \longleftrightarrow ”로 표시

<작성요령>

- “1.현황”은 “과실생산유통사업”의 예이므로,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
-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, 공동출하계획,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, 구성원의 현황(성명, 영농규모 등)을 첨부하여야함
-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(립)계획 등 작성